

<붙임 4>

서울특별시 적정임금(시중노임단가 이상) 지급 이행각서

우리회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“서울특별시 건설
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”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
여 금액을 적정임금(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 고시)) 이상 지급하
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
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
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18년 10월 19일

회 사 명 : 쌍용건설(주)

대 표 자 : 김 석 준

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

